

개 선

제 목 원료사용량 증명서 발급업무 절차 마련
소 관 부 서 □□□□처 ☒☒☒☒팀
내 용

☒☒☒☒팀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34조(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) 및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 제24조(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)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부터 원료 사용량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업무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.

2017년부터 현재까지 원료사용량 증명서 발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4회 원료사용량증명서가 발급되었다.

원료사용량 증명서 발급업무는 그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해 온 기관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「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업무 규정」을 준용하고 관련 법률에 준해 확인·발급하고 있었다.

그러나 기관업무 전문성 및 이에 준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원료사용량 증명서 발급업무를 지속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절차, 확인방법 등이 요구된다.

또한 원료사용량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의 규정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은 곧 부패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조치할 사항

■■■■팀은 「개별소비세법」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원료사용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, 보다 명확히 원료사용량 확인과 관련해 신청서류, 증빙자료첨부, 사용량 확인 및 발급 방법, 실지조사 요구 등 절차를 규정화하여 발급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·운영하시기 바랍니다.